

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0. 2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0. 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66호)
- 상 정 : 2007. 10. 9.(제117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)

가. 제안이유

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“사천시 소속직원”에서 “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하고 “사천시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직원”을 “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개정(안 제3조제2항)
- 2) 시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(안 제8조)

다. 관계법령

- 「공직자윤리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,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와 제20조의2에 의거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을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

사항으로 하고,

- 매년 2차 정례회시 전년도 재산등록, 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,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,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 내용	답변자	답변 내용
이정희 위원	○ 위원회 관할 대상을 5급 이하로 개정하는 이유는? ○ 누락 착오 신고시 조치사항이 있는지,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? ○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?	기획감사 담당관 김영고	○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시위원회 관할대상을 변경하는 것임. ○ 재산등록 신고시 누락 착오시는 보완요청하고, 시정·경고 조치한 바 있으나 고발 등 처벌한 사례는 없음(법에는 처벌가능함) ○ 위원장은 법원 진주지원 부장급 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, 시의원 등 분야별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